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경주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9.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36건	17	19	5	115,048	4	1,204,970	1	558,560
1	○○○○○과	직무파견 별도정원 관리 소홀		1						
2	○○○○○과	과장급 직위 직렬불부합 및 부서별 정·현원관리 소홀		1						
3	○ ○ ○ ○ 과 ● ●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1						
4	○ ○ ○ ○ 과	공무원 겸직허가 미이행		1						
5	○ ○ ○ ○ ○	출연금 예산편성 부적정		1						
6	○ ○ ○ ○ 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부적정		1						
7	○ ○ 과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1							309,763
8	○ ○ 동 ● ●	아동급식비 지급관리 소홀		1						
9	○ ○ 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소홀		1						
10	○○○○○과 ●●●●●●●●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1							
11	○ ○ ○ ○ 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 처분 부적정		1						
12	○ ○ ○ ○ 과 ● ● ● ●	◎◎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에 따른 예산 낭비		1						
13	○ ○ 과 ● ● ● ●	●● 구매 설치 업무 추진 부적정		1						
14	○ ○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1						
15	○○○○○○○	물품구매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1						
16	○ ○ ○ ○ 과	게임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등		1						
17	○ ○ 과	소유 미술품 관리 소홀 등	1							
18	○ ○ 과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 부적정	1		1	2,480				
19	○ ○ ○ ○ 과	위탁대행수수료 정산 부적정	1		1	5,400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20	○ ○ 과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1		1	52,007				
21	○ ○ ○ ○ 과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소홀		1						
22	○ ○ ○ ○ 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1							
23	○ ○ 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등 부적정	1							
24	○ ○ ○ ○ 과	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행위 과태료처분 부적정		1						
25	○ ○ ○ ○ 과	●●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등 부적정	1				1	86,000		
26	○ ○ ○ ○ 과 ● ●	기술용역 적격심사(PQ) 수행 중 적격심사 포기서 근거서류 미확인		1						
27	○ ○ ○ ○ 과 ● ● ● ●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반영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	1		1	32,851				
28	○ ○ 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1						
29	○ ○ ○ ○ 과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부적정	1							
30	○ ○ ○ ○ 과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1						
31	○ ○ 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							
32	○ ○ 과	●● 둔치조성사업 감독 소홀	1				1	7,545		
33	○ ○ 과	◎◎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1				1	928,425		
34	○ ○ 과	◇◇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1				1	183,000		
35	○ ○ ○ ○ 과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청구 등 정산 소홀	1		1	22,310				
36	○ ○ 과 ● ● ◎ ◎	도로점용료 등 부과업무 부적정	1						1	248,797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무파견 별도정원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6급 2명을 ◎◎◎◎◎ ◇◇ 업무로 파견함에 따른 결원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결원보충을 승인받아 2018. 7. 25. ●●7급 2명을 ●●6급으로 승진임용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VI. 승진임용 2.근속승진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방법으로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2018. 4. 1. 근속승진한 ●●6급 A와 ●●6급 B를 ◎◎◎◎◎ ◇◇ 업무로 직무파견한 결원에 대하여 경상북도로

결원보충 승인 신청을 하며 근속승진한자의 종전직급을 결원으로 보고 결원보충 신청하여야 했고, 근속승진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종전의 직급에 대하여 보충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업무 지원파견 요청에 대하여 2018. 4. 1. 근속 승진한 ●●6급 A와 ●●6급 B를 2018. 7. 9. 파견하고 2018. 7. 16. 경상북도로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신청을 하며 근속 승진한 A, B 두 사람의 결원직급이 ●●7급임에도 ●●7급에 대한 결원보충을 신청하지 않고 ●●6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결원보충 신청하여 ●●6급 2명을 결원보충 승인받았고, 승인결과에 따라 근속 승진한 ●●6급(◆◆) A의 ●●7급 결원에 ●●7급 DA을, ●●6급(□□) B의 ●●7급 결원에 ●●7급 C을 승진할 수 없는 ●●6급으로 2018. 7. 25. 승진 임용하는 등 직무파견 및 근속 승진에 따른 별도정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과장급 직위 직렬불부합 및 부서별 정·현원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과장 및 읍면동장의 전보, 부서별 직원의 정·현원 관리 등 직원들의 보직관리 인사업무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1. 과장급 직위 직렬불부합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장 등 24개의 5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표 1]의 직위정원과 같이 해당 공무원의 종류만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표 1]의 24개의 5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된 직위정원에 적합한 공무원의 종류를 임용하여야 했다.

[표 1] 5급 이상 직렬불부합 운영 현황

소속	발령일자	직위요건 (행정기구시행규칙)	불부합 대상자			불부합 기간
			직위	직급	성명	
-	2018.10.01	●●5+◎◎5+◇◇5		▽▽5급	E	2018.10.01~2020.01.01
-	2018.10.01	●●5+◎◎5+◆◆5	-	▽▽5급	F	2018.10.01~2019.07.04
☞☞☞☞☞장	2018.10.13	●●5+□□5		◁◁5급	G	2018.10.13~2019.07.04
-	2018.10.13	●●5+□□5+◎◎5		▽▽5급	H	2018.10.13~2019.07.04
-	2018.12.15	▷▷	-	◎◎5급	I	2018.12.15~2019.01.07
-	2019.01.08	●●5+■5+◇◇5	-	◎◎5급	I	2019.01.08~2020.06.30
-	2019.01.08	●●5	-	□□5급	J	2019.01.08~2020.12.31
-	2019.01.08	●●5	-	◇◇5급	K	2019.01.08~2020.07.01
-	2019.07.05	●●5+◎◎5+◇◇5		◆◆5급	L	2019.07.05~2020.06.30
-	2019.07.05	●●5+◎◎5+◆◆5		◇◇5급	M	2019.09.05~2020.12.31
-	2019.07.05	●●5+◆◆5+◇◇5		▽▽5급	N	2019.07.05~2020.12.31
-	2019.07.05	●●5+◆◆5	-	◇◇5급	P	2019.07.05~2020.06.30
☞☞☞☞☞장	2019.07.05	●●5+□□5	-	◁◁5급	Q	2019.07.05~2020.06.30
-	2020.01.01	●●5+△△5	-	▶▶	R	2020.01.01~2020.06.30
-	2020.01.01	●●5+◎◎5+◇◇5		▲▲5급	S	2020.01.01~2020.12.31
-	2020.01.01	●●5+■5+◇◇5		◆◆5급	T	2020.01.01~2020.12.31
-	2020.03.02	●●5	-	□□5급	U	2020.03.02~2020.12.31
-	2020.07.01	●●5+▲▲5	-	▶▶	R	2020.07.01~2020.12.31
-	2020.07.01	●●5+▽▽5+▼▼5	-	◇◇5급	K	2020.07.01~현재
-	2020.07.01	◇◇5	-	●●5급	V	2020.07.01~2020.12.31
-	2020.07.01	●●5	-	▽▽5급	F	2020.07.01~현재
-	2020.07.01	●●5+□□5	-	◁◁5급	Q	2020.07.01~현재
-	2020.07.01	●●5+□□5+◎◎5	-	◇◇5급	W	2020.07.01~현재
-	2020.07.01	●●5+□□5+◁◁5	-	◇◇5급	X	2020.07.01~현재
☞☞☞☞☞장	2020.07.01	●●5+□□5	☞☞☞☞☞장	◁◁5급	D	2020.07.01~현재
-	2021.01.01	●●5+◎◎5+◇◇5	-	◆◆5급	Y	2021.01.01~현재
-	2021.01.01	●●5+◇◇5	-	□□5급	Z	2021.01.01~현재
-	2021.01.01	●●5+◆◆5+◇◇5	-	▽▽5급	AA	2021.01.01~현재
-	2021.04.08	●●5+□□5+◎◎5	-	◇◇5급	AB	2021.04.08~현재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8. 10. 1.부터 2021. 7. 2. 감사일 현재까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책정된 직위정원에 적합하지 않아 임용할 수 없는 <<5급 D 등 5급 이상 공무원 24명을 직위정원에 적합하지 않은 ♠♠♠♠♠장 등의 직위에 임용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다.

2. 부서별 정원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총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제2조에 따라 경주시의 정원관리기관 및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정원관리기관 및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에 정한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했다.

[표 2] 부서별 정·현원표(2021. 4. 8. 기준, ○○○○○과 작성)

부서명	정원	현원	결원 및 과원	비고(일반파견 및 휴직 등)
합계	1,679	1,658	-21	
♠♠♠	12	14	2	
♡♡♡♡♡♡♡	12	11	-1	
-	28	28	0	
-	12	12	0	
-	16	16	0	♣♣휴직1
-	22	27	5	
-	15	20	5	
-	21	22	1	일반파견2
-	18	17	-1	일반파견2
-	17	18	1	일반파견2
-	16	16	0	
-	20	22	2	
-	12	13	1	♣♣휴직1
-	12	13	1	

부서명	정원	현원	결원 및 과원	비고(일반파견 및 휴직 등)
-	14	13	-1	●●휴직1
-	17	16	-1	
-	22	20	-2	
-	13	15	2	
-	12	15	3	
-	22	19	-3	
-	21	22	1	●●휴직1
-	17	18	1	
-	16	16	0	♣♣휴직1
-	22	25	3	
-	18	21	3	일반파견1
-	26	27	1	
-	10	8	-2	
-	21	21	0	
-	22	22	0	
-	28	30	2	
-	32	32	0	♠♠휴직1
-	30	36	6	●●휴직1
-	33	32	-1	
-	21	17	-4	
-	19	17	-2	♠♠휴직1
-	14	21	7	●●휴직1
-	16	16	0	
-	22	19	-3	
-	14	12	-2	
-	29	22	-7	일반파견1
-	17	22	5	일반파견3
-	24	25	1	
-	45	51	6	♥♥ 3
-	27	24	-3	
-	36	31	-5	
-	27	33	6	
-	13	16	3	
-	14	15	1	
-	30	30	0	●●휴직1
-	18	18	0	
-	13	12	-1	
-	14	15	1	
-	47	47	0	
-	34	36	2	
-	11	11	0	
-	24	22	-2	
-	11	11	0	
-	15	14	-1	
-	13	12	-1	

부서명	정원	현원	결원 및 과원	비고(일반파견 및 휴직 등)
-	5	4	-1	
-	6	5	-1	
-	4	2	-2	
-	23	21	-2	
-	15	16	1	
-	23	19	-4	
-	18	18	0	
-	28	24	-4	
-	37	34	-3	
-	18	16	-2	
-	19	19	0	
-	18	16	-2	
-	18	15	-3	
-	17	16	-1	
-	19	19	0	
-	17	15	-2	
-	18	16	-2	
-	13	12	-1	♣♣휴직1
-	13	13	0	
-	18	16	-2	
-	15	13	-2	♣♣휴직1
-	18	17	-1	
-	17	16	-1	
-	19	15	-4	
-	22	17	-5	●●휴직1
-	16	15	-1	
-	16	12	-4	
-	12	11	-1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위 [표 2]와 같이 ♠♠♠ 등 특정 27개 부서에서 73명을 초과하여 임용하고 있고, ♥♥♥♥♥♥♥ 등 42개 부서에서는 규정에 정한 범위를 94명 모자라게 임용하여 운영하는 등 부서별 정·현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읍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여부를 협의하며, 2019. 7. 23. AC 외 2명 경주시 ◎◎면 ◇◇리 ㄱ번지의 농지전용허가(협의)와 2020. 10. 6. AD 외 1명 경주시 ◆◆면 □□리 ㄴ번지의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하여 전용허가(협의) 하였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000㎡를 초과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또한 「2017년 농지업무편람」 제6장 제2절1)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를 같은 종류의 시설²⁾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면적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1) 「2017년 농지업무편람」 P.260 <참고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 시설별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지침시달(농지51311-10268)호 공문 p483

2) 같은 종류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분류에 의한 시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2019. 7. 23. 토지소유주 AC 외 2명이 신청한 경주시 ◎◎면 ◇◇리 ㄱ번지의 1,720㎡ 농지전용허가 협의와 2020. 10. 6. AD 외 1명이 경주시 ◆◆면 □□리 ㄴ번지의 1,050㎡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협의하여야 했다.

[표]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수허가자	협의 신청	협의결과통보	전용면적	소재지	허가목적	토지소유주	토지사용승락
AC	2019.7.17	2019.7.31.	799㎡	◎◎면 ◇◇리 ㄱ	단독주택	AC	소유주 본인
AE	2019.7.17	2019.7.31.	458㎡				AC
AF	2019.7.17	2019.7.31.	463㎡				
AD	2020.10.6	2020.10.19.	524㎡	◆◆면 □□리 ㄴ	단독주택	AH	AH
AG	2020.10.6	2020.10.19.	526㎡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7. 17. 토지소유주 AC 외 2명의 건축신고에 따른 경주시 ◎◎면 ◇◇리 ㄱ번지의 1,720㎡ 농지전용허가(협의)와 2020. 9. 17. AD 외 1명이 경주시 ◆◆면 □□리 ㄴ번지의 건축신고에 따른 1,050㎡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하여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농지업무편람³⁾ 및 지침은 내부적으로 지켜야하는 규정으로 민원인들에게 내부규정을 근거로 전용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인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1,000㎡를 초과하여 위 [표]와 같이 전용허가(협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2021. 6. 30. 10:55 ■■■■■■부 농지전용담당자 AI과 유선연락을 통해 483쪽 지침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사람의 사용 승락을 받아서 1필지에 여러 사람이 전용신청 들어오는 경우는 무조건 면적회피를 하는 것으로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과한 규제라 해도 지침이 시달된 것임으로 지침을 준수할 의무는 있음으로 통화함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겸직허가 미이행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 지방●●주사 AJ은 ◎◎에서 임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소속 공무원은 공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경주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주시 소속 공무원 AJ은 2017. 6. 26.부터 감사일 현재(2021. 6. 25.) 까지 아래 [표]와 같이 ◎◎ 임원(사무장)을 겸직하면서도 경주시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표] 겸직허가 미이행 현황

부서명	성명	직급	단체명	직위	활동기간	겸직허가 여부
○○○○과	AJ	●●6급	◎◎	사무장 (전무이사)	2017. 6. 26. ~ 현재까지	부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출연금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주시 ○○○○○에서는 출연금 등의 예산편성과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는 해당 회계 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10% 이상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재)●● 등 5개 기관에 대해 직전 회계연도 대비 110% 이상 증액되는 총 6건의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 출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증액 출연금 타당성 검토 미이행 및 검토결과 미공개 현황

(단위 : 천 원)

출연기관	연도별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타당성 검토이행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당해연도	직전연도 대비 증액	직전연도 대비 증액비율		
(재)●●	2018	200,000	200,000	순 증	-	-
	2019	1,000,000	800,000	500%	미이행	미공개
(재)○○○	2019	2,145,000	-	-	-	-
	2020	2,700,000	555,000	126%	미이행	미공개
◇◇	2019	500,000	500,000	순 증	-	-
	2020	700,000	200,000	140%	미이행	미공개
(재)◆◆	2018	425,000	-	-	-	-
	2019	991,060	566,060	233%	미이행	미공개
(재)□□	2018	500,000	-	-	-	-
	2019	1,100,000	600,000	220%	미이행	미공개
	2020	400,000	△200,000	-	-	-
	2021	550,000	150,000	138%	미이행	미공개

2. 법령에 근거 없는 출연금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인 ■■■에 ‘△△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도 100,000천 원을 부당하게 출연하였다.

[표 2] 법령에 근거 없는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출연연도	관련부서	출연기관	출연금액	출연목적	근거법령 여부	비고
2020년	▲▲▲▲▲▲▲	■■■	100,000	△△ 조성	부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의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했어야 했다.

한편 경주시 ○○○○과에서는 과태료 면제 타당성 검토 시 별첨자료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⁴⁾ 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6.부터 감사일 현재(2021. 6. 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타당성이 없는 총 506건에 대해 과태료 18,418천 원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경주시 세외수입 18,418천 원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현황

연도별	단 속 건 수 (①)	부 과 건 수 (②)	면 제 건 수 (①-②)	부적정* 면제건수	부당면제 대상유형별 건수	부 당 면제금액 (천 원)
계	64,344	62,174	2,170	506	506	18,418
2018 (6월 이후)	11,218	10,807	411	191	191	6,728
2019	21,771	20,888	883	281	281	10,538
2020	22,223	21,576	647	34	34	1,152
2021 (5월 말까지)	9,132	8,903	229	-	-	-

* 부적정 면제건수 : 당사자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누락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5-446호, 2015.12.7.)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

[별첨 자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

구 분	주요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운송장 사본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 1.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감면받은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309,763천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창업중소기업 감면 추정대상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추정사유	취득일	과세표준	추징세액
계	4건					7,387,580	309,763
1	●●	-	-	2년 이내 매각	2016.03.14	3,245,455	171,911
2	◎◎	-	-	2년 이내 매각	2016.04.26.	2,500,000	131,361
3	◇◇	-	-	2년 이내 매각	2016.09.12.	1,222,125	1,173
4	AK, AL	-	-	착오 감면	2017.02.13.	420,000	5,318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아동급식비 지급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동, ●●동

내 용

경주시 ○○동, ●●동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급식비 적합여부의 조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하고,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제2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이다.

한편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5~6월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 아동 가구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대상 아동의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판단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후 그 결과를 신청자(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매년 5~6월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 아동 가구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경주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격을 상실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급식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아동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주시 ○○동 및 ●●동에서는 아동급식 계속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자격을 상실한 아동 4명에게 아동급식비 7,346천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아동급식비 착오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행정동	아동명	생년월일	지급사유	지 급 개시월	자 격 중지월	총 지급액	착 오 지급액	착오지급 사유	비 고
계		4명					11,605	7,346		
1	○○동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2018.12.	2018.12.	2,770	2,251	수급자격 상실	2019년, 2020년 재판정 소홀
2	○○동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2018.12.	2018.12.	2,630	2,110	수급자격 상실	“
3	○○동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2018.12.	2019.06.	2,525	2,025	수급자격 상실	“
4	●●동	-	-	한부모가구 아동	2013.01.	2019.01.	3,680	960	자격 중지	2019년, 2020년 재판정 소홀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이용실태 조사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면

내 용

경주시 ○○면에서는 매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의 휴경 여부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 농지,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 농지로 분류하여 ●●●●과에 보고하고, 농지의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이행하고 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주시 ●●●●과에서는 2018. 9. 5. 읍면에 ‘2018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계획’을 통보⁵⁾하였고, 2015. 7. 1. ~ 2018. 6. 30.

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2018. 12. 10.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2020. 8. 3. 읍면에 ‘2020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 계획’을 통보⁶⁾하였고, 2015. 7. 1. ~ 2020. 6. 30.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2020. 12. 11.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읍면에서는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처분대상농지조사표를 작성하여 ●●●●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주시 ○○면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면 ◆◆리 ㄷ번지 외 2필지 농지가 골재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경작중인 것으로 ●●●●과에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를 제출⁷⁾하였다.

[표 2] 농지이용실태 조사 부적정 내역

(단위 : m²)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원인 및 취득목적	취득일	경작자	이용현황	실제 이용상황	불법 전용시기	부적정 조사연도
계	3필지									
1	○○면 ◆◆리 ㄷ	답	4,385	매매 농업경영	2016. 1. 7.	AM 외 3	농작물경작	차량주차 및 쇄석 포석(일부)	2017년	2018년, 2020년
2	○○면 ◆◆리 ㄹ	답	126	매매 농업경영	2015. 11. 30.	AM 외 3	농작물경작	차량주차 및 가설건축물 축조	2019년	2020년
3	○○면 ◆◆리 ㅁ	답	5,009	매매 농업경영	2016. 1. 7.	AN 외 3	농작물경작	골재야적장	2018년	2018년, 2020년

그 결과 [표 2]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의 불법 전용상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경주시 ●●●●과-19637(2018. 9. 5.)

6) 경주시 ●●●●과-7473(2020. 8. 3.)

7) 2018년 : 2018.12.11.(○○면-11794) / 2020년 : 2020.12.11.(○○면-14170)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

내 용

경주시 ○○○○과 및 ●●●●●●●●●●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 조성사업 및 ◆◆ 조성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인·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부과금액, 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 및 ●●●●●●●●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을 인·허가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경상북도에 통보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1. ○○○○과 관련 사항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8. 12. 19. ○○○○환경청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접수하고 2019. 1. 9.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음에도 2021.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 인·허가등에 대해 부과기관인 경상북도 □□□□과에 통보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86,470천 원이 미부과 되었다.

2. ●●●●●●●● 관련 사항

경주시 ●●●●●●●●에서는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0. 5. 12. ○○○○환경청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접수하고 2020. 6.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음에도 2021. 6. 21.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 인·허가등에 대해 부과기관인 경상북도 □□□□과에 통보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37,813천 원이 미부과 되었다.

그 결과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124,283천 원에 대한 부과가 지연되었다.

[표]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인·허가등 미통보 사업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시행자	사업 인·허가일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예상액	비고
계	2개 사업				124,283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 조성) 사업	-	147,089㎡	경주시장	'19. 1. 9.	86,470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18. 12. 19.)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 조성) 사업	-	82,277㎡	경주시장	'20. 6. 10.	37,813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20. 5. 12.)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생태계보전협력금 인·허가사항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 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및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항이 신설되어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020. 5. 27. 이전에 받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020. 5. 27.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⁸⁾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취소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주)●●이 2019. 10. 30.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을 위반하여 2019. 11. 26.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0백만 원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3. 16.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함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31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8)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719, 회신일자 2021. 2. 24.)

[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적정 내역

업체명	위반사항	위반일자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13조의2제3항) [악취배출 기준초과] (100배/기준 15배)	'19. 10. 30.	과징금 20백만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19. 11. 26.	정상 처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13조의2제3항) [악취배출 기준초과] (669배/기준 500배)	'21. 3. 16.	과징금 31백만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21. 4. 9.	과징금 처분 부적정

이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할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미실시에 따른 예산 낭비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경주시 ○○○○과 및 ●●●●과에서는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를 2018. 10월부터 2021. 5월까지 23회(구매금액 1,614백만 원)에 걸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물품 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의 납품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달청 고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및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⁹⁾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되, 최대 10% 범위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을 말함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임의로 분할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회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 및 ●●●●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1억 원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다수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0월부터 2021. 5월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를 구매하면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한 후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특히 ○○○○과는 ◎◎를 제작·관리하는 부서로, 해당 연도의 ◎◎ 구매예산을 전년도 ◎◎ 구매량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감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 납품 요구 대상금액을 미리 추정하여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2018. 10월부터 2021. 5월까지 구매금액 1,614백만 원을 총 23차례에 걸쳐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특정 2개 업체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지정하여 ●●●●과에 구매 요청하였고,

●●●●과에서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의 ◎◎ 구매요청을 받은 대로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였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아 다수공급자의 공정한 경쟁입찰 기회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을 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등록된 계약금액 그대로 ◎◎를 구매하여 최대 161,461천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 구매 2단계 경쟁 미 실시 내역(2018. 10. ~ 2021. 5.)

(단위 : 장, 천 원)

연번	품명 (구매량)	품의일자 (지급일자)	계약방법	계약(품의) 금액	구매금액	10% 할인액	업체명
계				1,623,375	1,614,612	161,461	
1	◇◇○○○ (850,000)	'18.10.11. ('18.11.21.)	제3자 단가계약	82,772	82,350	8,235	◇◇
2	◇◇○○○ (48,000)	'18.10.15. ('18.12.10.)	"	5,982	5,952	595	○○
3	◇◇○○○ ◆◆○○○ (450,000)	'18.11.14. ('18.12.27.)	"	27,590	27,450	2,745	○○
4	◇◇○○○ (400,000)	'18.11.28. ('18.12.28.)	"	42,110	41,900	4,190	◇◇
5	◇◇○○○ □□○○○ (390,000)	'19.1.10. ('19.3.8.)	"	37,008	36,810	3,681	○○
6	◇◇○○○ ◆◆○○○ (750,000)	'19.1.24 ('19.4.2.)	"	84,001	83,550	8,355	◇◇
7	◇◇○○○ ◆◆○○○ □□○○○ (620,000)	'19.3.26. ('19.5.16.)	"	48,691	48,430	4,843	◇◇
8	◇◇○○○ ◆◆○○○ (550,000)	'19.4.12 ('19.6.14.)	"	32,072	31,900	3,190	◇◇
9	◇◇○○○ ◆◆○○○ (1,350,000)	'19.5.23. ('19.8.6.)	"	90,327	89,842	8,984	◇◇
10	◇◇○○○ ◆◆○○○ (650,000)	'19.6.25 ('19.8.27.)	"	80,482	80,050	8,005	◇◇
11	◇◇○○○ ◆◆○○○ (1,170,000)	'19.8.5. ('19.10.23.)	"	78,521	78,100	7,810	◇◇
12	◇◇○○○ ◆◆○○○ (900,000)	'19.9.25. ('19.12.3.)	"	79,205	78,780	7,878	◇◇

연번	품명 (구매량)	품의일자 (지급일자)	계약방법	계약(품의) 금액	구매금액	10% 할인액	업체명
13	◇◇○○ ◆◆○○ (850,000)	'20.1.3. ('20.3.3.)	"	81,688	81,250	8,125	◇◇
14	◇◇○○ □□○○ (1,190,000)	'20.2.6. ('20.3.31.)	"	90,427	89,841	8,984	◇◇
15	◇◇○○ ◆◆○○ (1,500,000)	'20.3.9. ('20.5.13.)	"	86,866	86,400	8,640	◇◇
16	◇◇○○ (620,000)	'20.4.14. ('20.6.2.)	"	90,775	90,288	9,029	◇◇
17	◇◇○○ □□○○ (1,270,000)	'20.6.4. ('20.7.23.)	"	78,702	78,280	7,828	◇◇
18	◇◇○○ (720,000)	'20.7.30. ('20.9.14.)	"	97,225	96,703	9,670	◇◇
19	◇◇○○ □□○○ (550,000)	'20.10.13. ('20.12.14.)	"	38,959	38,750	3,875	◇◇
20	◇◇○○ □□○○ (710,000)	'21.1.4. ('21.2.17.)	"	98,479	97,950	9,795	◇◇
21	◇◇○○ ◆◆○○ (1,360,000)	'21.2.10. ('21.3.24.)	"	95,951	95,436	9,544	◇◇
22	◇◇○○ ◆◆○○ (1,700,000)	'21.3.23. ('21.5.17.)	"	89,681	89,200	8,920	◇◇
23	◇◇○○ ◆◆○○ (750,000)	'21.5.17.	"	85,861	85,400	8,540	◇◇

※ 경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〇〇 구매 설치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〇〇과,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〇〇 구매 설치” 사업을 발주하여 경주시 〇〇과로 계약 요청하였고, 〇〇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주식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〇〇 구매 설치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체결일	비고
합 계	227,901			
〇〇 구매 설치(2020)	99,150	◇◇ 주식회사	2020. 5. 15.	
〇〇 구매 설치(2021)	128,751	◇◇ 주식회사	2021. 3.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따르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 시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와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물품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려는 내용이 해당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를 검토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1. 경주시 ●●●●과의 경우

경주시 ●●●●과에서는 “제조사 기술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 구매 설치 사업을 발주하였다.

위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전 도입장비의 총판사인 (주)□□에 장비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 등에 관해 문의하여 “원활한 기술지원과 장애대응을 위하여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증 엔지니어를 보유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도내에 자격을 갖춘 관련 파트너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타 지자체 입찰 사례도 검토하여 “제조사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도내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위 부서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부서를 통해 “한국■■△△”로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본 결과 “■■ 자격증을 소지한 엔지니어의 회사소속, 또는 현재 개인별 소속현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별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 □□에서 주관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어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도내 23개 시군의 ○○ 구매 관련 입찰공고문을 확인해 본 결과 “제조사 기술자격증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곳은 경주시 ●●●●과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1개 시군¹⁰⁾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 엔지니어 보유 제한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라면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경주시 ●●●●과에서는 장비 총판사의 권장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자격제한을 만족하는 도내 업체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제조사 기술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라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 요청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법령에 맞지 않게 제한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2. 경주시 ○○과의 경우

경주시 ○○과에서는 ●●●●과의 자격제한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기 사업은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물품구매 계약임에도 “제조사 기술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라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공고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2020년, 2021년에 낙찰하한율¹¹⁾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 주식회사”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업체는 모두 자격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경주시 ○○과에서는 2020년 11순위, 2021년 3순위 업체인 “◇◇ 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2019. 4. 29. ▲▲에서 게시한 “○○ 구매설치” 공고의 과업지시서에 “제조사 기술자격증(1인 이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4.245% 적용

[표 2] 2020년 ○○ 구매 설치 개찰순위 및 적격심사 포기 사유

순위	상호명	대표자명	투찰률	적격심사 포기 사유	비고
1	-	-	84.327	자격요건 미충족	
2	-	-	84.437	자격증 미소지	
3	-	-	84.579	자격사항 및 자기평가점수 미달	
4	-	-	84.640	제조사 기술자격증 취득 엔지니어 미보유	
5	-	-	84.659	제조사 기술자격증 취득 엔지니어 미보유	
6	-	-	84.787	종합평점 미달 및 자격조건 미비	
7	-	-	84.876	제조사 기술자격증 취득 엔지니어 미보유	
8	-	-	84.976	입찰 참가자격 조건 미달	
9	-	-	85.119	제조사 기술자격증 취득 엔지니어 미보유	
10	-	-	85.706	자격사항 및 자기평가점수 미달	
11	◇◇ 주식회사	AO	85.743		계약체결
12	-	-	85.801		
13	-	-	86.268		
14	-	-	87.730		
15	-	-	89.647		
16	-	-	98.254		
17	-	-	99.450		
18	-	-	83.429		낙찰하한선 미달
19	-	-	83.550		낙찰하한선 미달
20	-	-	83.614		낙찰하한선 미달
21	-	-	83.791		낙찰하한선 미달
22	-	-	83.884		낙찰하한선 미달
23	-	-	84.177		낙찰하한선 미달
24	-	-	84.186		낙찰하한선 미달

[표 3] 2021년 ○○ 구매 설치 개찰순위 및 적격심사 포기 사유

순위	상호명	대표자명	투찰률	적격심사 포기 사유	비고
1	-	-	85.082	기준심사 미달(자격증)	
2	-	-	86.418	입찰자격요건 미비	
3	◇◇ 주식회사	AO	86.616		계약체결
4	-	-	89.640		
5	-	-	91.358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각종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과 인쇄출판물 제작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공공기관 홍보 영상 제작과 인쇄출판물 제작에 대하여는 그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사업자와 아래 [표]와 같이 9건 136,350천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 계약 내역

연번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 원)	비고
	합 계			136,350	
1	□□ 홍보영상 제작 용역 시행	●●	2018. 9. 12.	11,000	
2	■ ■ 홍보 영상물(▶▶)제작 용역	○○	2018. 9. 13.	16,440	
3	△△ 홍보영상물 제작	○○	2018. 10. 31.	18,800	
4	▲▲ 추진상황 영상물 제작	○○	2019. 2. 20.	12,500	
5	▽▽ 교재 유인	◇◇	2019. 3. 12.	10,530	
6	▼▼ 홍보 영상물(▶▶)제작 용역	○○	2019. 8. 23.	17,900	
7	◁◁ 홍보영상물 제작	○○	2019. 12. 10.	18,800	
8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	(주)◆◆	2020. 12. 7.	12,160	
9	▷▷ 홍보영상물 제작	○○	2020. 12. 8.	18,220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주시 ○○○○○○ ●●●●과에서는 ○○○○○○ 소관 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의 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견적서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등에 부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추정가격 76,000천 원의 ◎◎ ◇◇ 구입 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소액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였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 구입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체결일	계약방법	정당계약방법
◎◎ ◇◇ 구입	83,600 (76,000)	75,240	◆◆ 주식회사	2019. 6. 4.	2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 (적격심사)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에서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이 되지 않는¹²⁾ 사업자와 아래 [표 2]와 같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2) 감사기간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계약체결 시점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계약담당자를 통해 계약체결 당시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함

[표 2] 소기업·소상공인 미해당 업체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체결일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비고
합 계	83,050				
△△ ■■ 구입	41,000	▽▽	2019. 2. 21.	부	
▲▲ ■■ 구입	42,050	▼▼	2020. 3. 9.	부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게임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등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게임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경주시 ○○○○과에서는 게임제공업소의 등록과 폐업, 행정처분,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게임제공업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2020. 7. 27.과 2020. 8. 7. 경주경찰서에서는 “●●”(대표자 AP)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 업소임을 통보하는 공문¹³⁾을 발송하였고, 경주시 ○○○○과에서는 2020. 7. 27.과 2020. 8. 10.에 해당 공문을 각각 접수하였다.

이 후 경주시 ○○○○과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 9. 16. 위반업소에 사전통지를 하고 2020. 9. 22.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대표자가 법원 판결 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청문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21. 4. 1. ◇◇지방법원 ◆◆지원에서 위반업소 운영자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판결 조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¹⁴⁾,

아래 [표]와 같이 2020. 6. 22. ●● 대표자 AP으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¹⁵⁾ 받은 AQ는 “□□”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1. 5. 18. 폐업하였다.

[표] 게임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수사기관 통보일자	업소명 (대표자)	위반사항	미 조치 행정처분 내용	비 고
2020. 7. 27. 2020. 8. 7.	●● (AP)	사행행위(1차)	허가취소	□□로 상호변경(대표자 : AQ) 후 2021. 5.18. 폐업신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게임산업법」 위반 업소가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2021. 5. 18. 폐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3) 경주경찰서 ■■■과-3294(2020. 7.27.), ■■■과-3444(2020. 8. 7.)

14)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인 2021. 7. 1. 위반 업소의 판결문을 ◇◇지방법원 ◆◆지청에 요청하였고, 2021. 4. 1.자 판결문(게임장 실제 운영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게임기 60대는 몰수 처분)을 회신 받아 2021. 7. 2. 이 건에 대한 ○○○○과장의 확인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15) 「게임산업법」 제37조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 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2. 행정처분 사항 공고 미이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68건의 행정처분¹⁶⁾을 하고 그 사실 및 내용을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6) ○○○○과 제출 ‘게임산업 행정처분 관리대장’ 참조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유 미술품 관리 소홀 등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 미제정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본청은 ○○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품관리관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¹⁷⁾을 관리하고 있다.

경주시 새울행정시스템 내 미술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주시 보유·관리 미술품은 현재 아래 [표 1]과 같이 총 56점이고, 본청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사진 7점 등 16점을 관리하고 있다.

[표 1] 경주시 미술품 보유 현황

(단위 : 점, 천 원)

합 계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공예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6	52,700	6	10,200	13	18,300	8	16,200	26	7,700	3	300

17)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표 2] 경주시 본청 미술품 보유 현황

(단위 : 점, 천 원)

합 계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공예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6	8,300	-	-	4	1,300	2	4,100	7	2,600	3	3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따르면 미술품은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운영규정(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 3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이를 반영하였고,

운영기준에는 2011.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안(예시)」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기증,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 미술품 관리 소홀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그 증감사항을 시·군에서는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품관리관은 12월 31일 현재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술품 대장에 정리, 미비사항은 지도 및 시정조치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미술품은 반드시 작품사진을 포함하여 새울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등재한 미술품은 주요 이력을 “미술품관리카드”(사진첩 또는 앨범) 형태로 정리하여 현품과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미술품 현품에 “명제표”를 부착한 후 게시,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은 5년 마다 가격을 재평가 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해야 하는 등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미술품 증감현황 및 증감내역을 경상북도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술품 관리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일부 미술품은 미술품관리시스템 관리대장과 실제 게시(보관)장소가 상이하고 미술품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명제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문화재청훈령, 이하 “동경이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라 함은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로서 경주시에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것으로 등록된 등록건을 말하며,

같은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경주개 동경이 관련지침 등 미 준수

경주시 ○○과에서는 2019년 4월부터 경주시 ◆◆◆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의 관련 업무를 이전 받아 수행하고 있고, 경주시장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동경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와 경주개 동경이 보호 육성 대행용역 협약을 2019. 12. 30. 체결(협약기간 : 2020. 1. 1. ~ 2022. 12. 31.)하여 동경이 보호, 상품화 개발, 동경이 관련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이 관리지침 제5조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동경이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전년도 12월말 현재 경주시내 동경이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2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연 1회 경주시 내의 동경이 사육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경이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동경이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2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연 1회 사육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년도 동경이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¹⁸⁾, 연 1회 사육실태 조사와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자견(子犬) 관외 분양 부적정

동경이 관리지침 제4조와 제9조, 동경이 조례 제3조와 제22조에 따르면 동경이의 최소 사육두수는 300마리로 하며, 동경이가 최소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조례의 경우 “사육두수”를 “등록두수”로 표기)

경주시와 ●●가 체결한 협약서에 ●●는 동경이의 사양·번식·혈통관리를 통한 천연기념물 300두 보호 등을 위탁대상 사무로 하고 있다.

18) ○○과 관계공무원은 관련 자료 제출 및 감사관과 문답 시 2020년 및 2021년도 동경이 보존·관리계획을 수립 하지도 문화재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계획수립 문서는 없음)고 확인, 답변 하였으나, 2021. 7. 2. 이 건에 대한 ○○과장의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면서 문화재청으로 제출(2020. 4.10.)한 2020년도 관리계획 자료(공문)를 함께 제출함

따라서 ●●에서는 동경이가 최소 사육두수인 300두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경주시 ○○과에서는 사업실적보고서, 월별 대행용역 실적 등을 확인하거나 정기감사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 최소 사육두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최소 사육두수 유지와 보호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동경이의 최소 사육두수가 300두 이하인 데도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출생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천연기념물 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동경이의 자견을 관외 분양하여 타 지역으로 반출하였고, 경주시 ○○과에서는 최소 사육두수가 300두 이하인데도 관외 분양이 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관외 분양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의 동경기 자견 관외 분양(타 지역 반출) 현황¹⁹⁾

(단위 : 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9 등록 동경기	관외 분양	'20.2~'20.12. 등록 동경기	관외 분양	'21.1~'21.5. 등록 동경기	관외 분양
확인불가	5	291~298	1	290~294	4

※ 경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동경기 분양에 따른 수익금 처리 부적정

동경기 관리위원회에서는 2019. 9. 25.(1차)과 같은 해 10. 10.(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경이의 소유권을 2019년 말까지 ●●에서 경주시로 이전하며, 동경기 관리는 ●●로 위탁하고 관련 수익은 경주시 수입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²⁰⁾

또한 경주시와 ●●가 2019. 12. 30. 체결한 대행용역 협약서에는 ●●가 동경이를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19) 연도별 등록 동경기 수는 대행용역 협약서 제7조에 따라 2020. 3월부터(2월 실적) ●●가 제출한 월별 대행용역 실적을, 관외분양 두수는 ○○과 제출자료를 참조하였으며, 2019년도까지는 협약 체결 전으로 월별 등록 동경기 수 확인 불가

20) 관련공문 : 제1, 2차 동경기 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경주시 ○○과-23458, 2019. 10. 21.)

않으나, 협약서 제2조에 따르면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법규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등을 명시하고 있고,

경주시가 하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동경이 분양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 전부를 위탁기관인 경주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경주시 ○○과에서는 수익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경주시와 ●●가 협약 체결 이 후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0년도에는 특별분양 3두를 포함하여 총 10두를 분양하여 2,480천 원,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5두를 분양하여 4,220천 원의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표 2] 동경이 분양현황

(단위 : 두, 천 원)

2020년도								2021년도					
계		관내		관외		특별분양		계		관내		관외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10	2,480	6	1,480	1	1,000	3	-	5	4,220	1	220	4	4,000

※ 경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2020년도 동경이 분양수익금 2,480천 원을 정산하여 경주시로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경주시 ○○과에서는 동경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년도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월별 대행용역 실적 등을 확인 또는 정기 감사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협회가 수익금을 반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반납된 2020년도 분양수익금 2,480천 원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탁대행수수료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대행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경주시 ○○○○과에서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재)●●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540,000천 원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 27,000천 원을 승인 및 교부하였으며, 사업결과 집행액은 335,013천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위탁대행수수료는 32,400천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정산 시 변경 승인 없이 과다 정산된 위탁대행수수료 5,400천 원에 대하여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대행수수료 5,40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구제역 발생예방 및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약품 지원을 위해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사업(소와 돼지 사육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를 지원)”을 ●●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별표 11]에 따르면 기타 보상금(301-12)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 보조금은 사후정산 필수, 보상금은 정산 불필요

따라서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사업”은 소와 돼지 사육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기타 보상금(301-12)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예산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보조금 예산과목이 아닌 기타 보상금(301-12)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였다.

더욱이 위 부서에서는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농가에 지원할 보조금을 ●●에 일괄 선 지급하고, ●●에서는 해당 축산농가의 백신구입 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백신 공급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월별로 ○○과에 보고하면서 최종 정산보고서(기타 보상은 정산 의무 없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의 당초 계획대비 농가지원액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52백만 원이 경주시로 반환 조치되지 아니하였다.

[표]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사업” 사업비 운영 현황

연 도	경주시 사업비 운영			●● 사업비 운영(원)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원)	대행 사업자	경주시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863,141,750		863,141,750	811,133,861	52,007,889	
2020	기타보상금 (301-12)	390,580,000	●●	390,580,000	357,728,150	32,851,850	
2019	"	292,561,750	"	292,561,750	275,150,250	17,411,500	
2018	"	180,000,000	"	180,000,000	178,255,461	1,744,539	
※ 편성과목 : 2016년까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편성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2018년 ~ 2020년(3년간) ●●의 사업비 집행잔액 52,007천 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시유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의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상 시유림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경주시는 시유림 908필지 7,680ha(관리대상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국립공원구역, 도로, 공원, 미입목지, 대부지 등 212필지 1,762ha를 제외하고 696필지 5,918ha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대상지이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시유림 696필지 5,918ha 전체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10년 단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 180필지 2,646ha에 대해서만 수립하여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실적이 45%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실적은 2015년(1,346ha)과 2016년(1,300ha)에 수립되어 그 이후인 2017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5년간 산림경영계획 수립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시유림 관리에 소홀하였다.

[표 1] 경주시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현황

(면적단위 : ha)

시유림 전체 면적	산림경영계획수립 제외지				산림경영계획 수립 내역			
	소계	국립공원 구역	도로, 공원, 미입목지	대부지	대상면적	수립	미수립	수립률
7,680 (908필지)	1,762 (212필지)	1,516 (55필지)	189 (94필지)	57 (63필지)	5,918 (696필지)	2,646 (180필지)	3,272 (516필지)	45%

[표 2] 연도별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현황

연 도	면적 (ha)	필지수	계획기간	작성자	사업비 (천 원)	비 고
2016	1,300	68	2016~2025	●●	17,745	계획기간 중
2015	1,346	112	2015~2024	"	17,536	"
2008	1,730	95	2009~2018	"	18,000	계획기간 만료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보존 또는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영업자가 제7조 제4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1차 위반 시) 온도 기준을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그 밖의 기준을 위반 시 시정명령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영업자가 냉동수산물을 해동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냉장 보관·유통 적발시(1차 위반 시) 법적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해양경찰서에서 ◎◎이 ◇◇산 냉동 △△ 2팩을 해동하여 2019. 2. 12. 10:52부터 2019. 2. 13. 18:00까지 약 31시간동안 냉장판매대에 진열·유통한 사실을 적발하여(1차 위반) 경주시에 통보하였는데, 경주시 ○○○○과에서는 법적 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데도, 영업정지 3일(7일에서 감경)을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하였다.

[표 1]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업체명	소재지	위반사항	법 적 처분기준	경주시 행정처분	비고
(주)◎◎ (AR)	-	- ◇◇산 냉동 △△ 2팩을 2019. 2.12. 10:52 ~ 2.13. 18:00 (31시간) 동안 해동하여 냉장보관·유통 ※ 냉동수산물은 해동시 24시간 이내 냉장유통토록 규정	시정명령 (1차 위반)	과징금 390만원 ※영업정지 3일 감경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은 위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청소년 남녀혼숙에 따른 적발시 해당 영업소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2월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경주경찰서로부터 2019. 10. 27. 01:00경 “□□”이 청소년 남녀 2명(남 18세, 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시켜 아래 [표 2]와 같이 적발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통보받았는데도, 감사일 현재 (2021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내역

업체명 (대 표)	소재지	적발 내용	법 적 처분기준	진행 경과	비고
□□ (AS)	-	'19.10.27. 01:00경 청소년 남녀 2명 혼숙 ※ 남18세, 여17세	영업정지 2월	-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 통보 ('20.3.19.) - 행정처분 연기(유예) 처리 ('20.3.30.) ※ 검찰 수사결과시까지 유예신청 - 이후 행정처분 미실시	

※ 경주경찰서 ■■■■■과-65(2020.1.9.) 적발 공문 통보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과오납금 반환 및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등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여부 확인, 정기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지침」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매년 2월말까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²¹⁾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의 설치 후 6개월 이내 최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초 검사를 실시한 후 5년 · 10년 ·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 1회,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3]에 따르면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1차 위반시)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1) 등급은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으로 나누고 각각 1회/2년, 1회/1년, 상하반기 각1회/1년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등급상향조정은 해당등급에 속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등급조정은 직상위 등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가.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나.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다. 중점관리 :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사업장 및 시설, 토양오염사고 사업장 및 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장을 등급별로 분류한 후,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여부 확인, 결과보존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등 등급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등급별(우수·일반·중점관리)로 분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1]과 같이 등급별 분류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연간 점검 계획 수립 여부			여	부	부	
계			347	355	345	
등급별	우 수		-	-	-	
	일 반		347	355	345	
	중 점		-	-	-	
시설별	석유류	주유소	231	231	223	
		산업시설	88	93	92	
		기타	22	22	22	
	유독물		6	9	8	

※ 경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중 9개소는 법정기한을 초과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1개소는 2013. 11. 19. 검사 후 감사일 현재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토양오염도검사 기한 초과 등 내역

(단위 : 개소)

연번	대상명	소재지	완공일	검사기한	검사일	검사기한 초과일수
1	●●(주)	-	2001.2.16	2016.9.19	2019.4.26	952일
2	○○○	-	2001.2.16	2016.9.19	2019.4.26	952일
3	◇◇◇	-	1997.5.28	2018.10.25	2019.3.5	130일
4	◆◆	-	2003.8.14	2019.2.1	2020.11.10	554일
5	□□	-	1997.12.31	2019.2.3	2019.6.5	122일
6	■	-	1996.12.22	2019.5.2	2020.2.26	299일
7	△△	-	2009.3.5	2019.6.5	-	미실시 ²²⁾
8	▲▲	-	1993.1.29	2019.7.24	2020.5.21	302일
9	▽▽	-	2000.7.11	2019.10.19	2020.10.5	351일
10	▼▼	-	2000.7.7	2019.11.25	2020.8.31	281일

※ 경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토양오염도검사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2) 2013. 11. 19. 이후 검사 미실시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행위 과태료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승마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²³⁾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승마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면서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함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2019. 1월경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승마장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의 위반행위는 고발조치를 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신고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이를 미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과태료(130,000원) 처분예고 통지(2019. 2. 1.)를 하면서 같은 해 2. 15.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6. 17.에 이르러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1.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과태료 65,000원을 최종 부과처분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등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2020. 12. 18. (주)○○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진입도로 개설공사	진입도로 개설 L=1,257m	8,534	4,218	4,316	2020.12.24~ 2022.12.13	(주)○○	

1. 설계변경·실정보고 및 품질시험 없이 성토재(제강 슬래그²⁴⁾) 변경 시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을 말하며,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1.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24) 철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로 중금속 검출 시험 등을 거친 후 성토용 골재 등으로 활용

하며, 다만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우선시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주시 ○○○○과에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성토재를 “●●” 건설공사장(민간시행)에서 반입 계획하였으나,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이 늦어져 “●●” 건설공사장에서 성토재를 당초 계획대로 반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성토재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장 적용 가능성(재료 시험), 경제성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검토 후 설계변경하거나 실정보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시(2021. 6. 21.) 성토재 변경(토사→제강 슬래그)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실정보고 승인²⁵⁾없이 시공중에 있었으며, 또한 품질시험도 실시하지 않아 도로성토가 완료된 이후 도로 다짐의 적정성을 검사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²⁶⁾(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순성토량이 5,786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25) 제강 슬래그를 성토재로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사업비 118,000천 원 정도 절감

26)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미준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km 이상인 공사, 포장면적이 9천㎡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포장면적이 15,366㎡로 관련법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대상임에도 의무 사용하지 않아 사업비 33,000천 원²⁷⁾을 과다 계상하였다.

4.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과다 적용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따르면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 중심을 감안하여 110cm를 표준²⁸⁾으로 디자인·미관·경제성을 고려하여 110~120cm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방호울타리(웬스)를 L형 옹벽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방호울타리(웬스)의 필요 높이는 L형 옹벽 높이(50cm)를 공제한 최대 70cm의 방호울타리

27) 순환골재(보조기층재) 25,000천 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순환아스콘) 8,000천 원

28) 여기서 높이는 노면(보도가 있는 경우는 보도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

(웬스)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100cm의 방호울타리(웬스)를 계획하여 사업비 35,000천 원, 공사용 가도의 톤마대²⁹⁾를 물 흐름과 관계없는 부분에도 계획하여 사업비 18,00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5.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시설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연면적 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원		"	초급 1명 이상

[표 3] 품질시험계획수립 부적정 등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총공사비	품질시험 계획수립	시험실 (장비)	품 질 기술자	비고
●● 진입도로 개설공사	8,534	미수립	부	미배치	

29)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물량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대형 마대, 본 현장에서는 흙을 채워 물을 막는데 사용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위 [표 3]과 같이 “●●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현장임에도 품질시험계획 미수립(승인) 및 시험실(장비)·품질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사업비 86,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였고, 설계변경·실정보고 및 품질시험 없이 성토재 변경 시공,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미활용, 품질관리업무 미흡 등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당초와 변경되는 성토재(제강 슬래그)는 실정보고·설계변경 및 품질시험 등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시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자료 입력·관리 및 품질관리업무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 및 보행자용 울타리의 설치기준 미준수로 과다계상된 사업비 86,000천 원(제경비 포함)은 감액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술용역 적격심사(PQ) 수행 중 적격심사 포기서 근거서류 미확인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경주시 ○○○○과 및 ●●과에서는 아래 [표 1]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추진하였다.

[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과업량	계약금액	과업기간	계약자	비고
○○○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347,000	2020.06.04.~ 2021.01.29. (2021.1.14.중지중)	(주)□□	○○○○과
◇◇◇ 실시설계용역	"	245,000	2019.12.09.~ 2020.03.07	(주)■	●●과
◆◆◆ 실시설계용역	"	404,000	2019.12.10.~ 2020.03.08	△△(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3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르면 적격심사 대상자가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 ○○○○과 및 ●●과에서는 “◇◇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면서 업무담당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1순위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토록 통보한 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입찰가격평점 우선순위 입찰자가 근거서류 없이 “적격심사 포기서”만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판단 없이 후순위 입찰자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를 평가 후 결과를 경주시 ○●과에 통보하였다.

[표 2] 가격점수 개찰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순위	상호명	투찰금액	입찰가격평점	비고
○○○ 실시설계용역	1	(주)▲▲	344,330	56.96	포기
	2	(주)□□	346,880	59.56	계약
◇◇ 실시설계용역	1	(주)▽▽	243,730	55	포기
	2	(주)■	246,880	59.48	계약
◆◆ 실시설계용역	1	(주)▼▼	414,900	55.04	포기
	2	(주)◁	415,430	55.48	포기
	3	(주)◀	415,450	55.52	포기
	4	△△(주)	416,130	56.08	계약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반영 부적정(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경주시 ○○○○과 및 ●●●●과에서는 “○○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 사 현 황

부서명	공 사 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 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과	○○ 정비사업	2016.09.16. ~ 2020.01.31.	5,586	4,503	1,083	(주)◆◆	
●●●●과	◇◇ 정비사업	2018.03.23. ~ 2020.10.07.	6,205	3,609	2,597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의 약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7개 정산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표 2]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 경주시 ○○○○과 및 ●●●●과에서는 위 현황 사업의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32,851천 원을 정산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3]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회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 영 액	비고
계	회수 32,851		506,907	474,056	32,851	
○○○○과	◎◎ 정비사업	1회	102,736	95,960	6,776	회수
		2회	149,921	140,044	9,877	"
		3회	131,432	122,662	8,770	"
		4회	29,587	27,397	2,190	"
●●●●과	◇◇ 정비사업	1회	53,900	50,934	2,966	"
		2회	39,331	37,059	2,272	"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정산처리하지 못한 사업비 32,851천 원은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대상선정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받은 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아파트 ◎◎동에서 신청한 2020년도 ◇◇공사에 대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 지원 내역(2018년도 ◆◆사업, 3,378천원)이 있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16,016천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건에 대하여 626,617천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지원 받아야 할 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어 형평성 등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해당 공동주택에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었다.

2.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개시신고 검토 소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격심사제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및 “2020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경우 입찰 관련 서류, 표준도급계약서 및 착공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과에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개시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에서 2020. 5. 4. 신청한 “2020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개시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적격심사 평가위원 1명(AT)의 평가 서류만 제출되었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감사 기간 중인 2021. 6. 24. 4명의 평가자료를 제출 받았다.

또한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 사업제한 평가표(주식회사 ◆◆ 5점)와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주식회사 ◆◆ 3점)의 점수가 상이한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거주하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택의 연면적은 23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10. 23. 운영자 AU가 ◆◆면 ■■길 ㄴ에 신청한 단독주택 126.61㎡의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에 대하여 운영자가 2016. 8. 9.부터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 ◆◆면 ■■길 ㄹ 상의 단독주택 215.88㎡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 수리하는 등 5건의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운영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농어촌민박으로 가능한 230㎡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하여 운영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었다.

[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현황

운영자	대지위치	연면적(㎡)	초과연면적(㎡)	교부일자	민박명칭
AU	경주시 ◆◆면 ■■길 □	215.88	112.49	2016. 8. 9.	●●
	경주시 ◆◆면 ■■길 ㄹ	126.61		2020. 10. 27.	◎◎
AV	경주시 ◆◆면 ■■길 ㅂ	213.72	149.86	2018. 11. 2.	◇◇
	경주시 ◆◆면 ■■길 ㅅ	166.14		2020. 10. 27.	◆◆
AW	경주시 ◆◆면 ○○로 ㅈ	216.34	158.63	2016. 6. 20.	□□
	경주시 ◆◆면 ■■길 ㅊ	172.29		2020. 10. 27.	■ ■
AX	경주시 ◆◆면 ■■길 ㅋ	184.5	132.88	2020. 5. 13.	△△
	경주시 ○○읍 ㉮길 ㅌ, ㅍ	178.38		2021. 4. 30.	▲▲
AY	경주시 ◆◆면 ■■길 ㅎ	103.73	-	2020. 7. 31.	▽▽
	경주시 ◆◆면 ■■길 ㅊ	120.98		2021. 5. 27.	▼▼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운영자에게 사업자 폐쇄 등 농어촌민박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수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 및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는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며,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건축주 AZ이 경주시 ●●동 ㄱ번지 외 3필지 상에 신청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한 160.25㎡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2021. 3. 23. 건축신고 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총 3건의 건축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공사 감리자가 없이 건축허가 대상 공사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었고, 건축허가에 비해 간소한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였으며, 설계비, 감리비 등 건축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었다.

[표 1]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신고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층수	비고
					기존	신청		
신축	경주시 ●●동 ㄱ 외 3	2021. 3. 23.	AZ	□□	-	160.25	2	60.25㎡ 초과
증축	경주시 ◎◎동 ㄴ	2020. 12. 29.	BA	■ ■	353.78	84.69	3	49.312㎡ 초과
증축	경주시 ◎◎동 ㄷ	2019. 5. 17.	BC	△ △	187	78.96	3	60.26㎡ 초과

2. 내화구조 검토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원장이 관련 고시에 따라 인정한 구조로 석고보드, 내화뿔철, 내화도료 등이 있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축주 BD가 ◇◇읍 ◆◆리 ㄴ번지에 신청한 ▲▲ 증축허가 및 건축주 BC이 ◎◎동 ㄱ번지에 신청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증축신고를 처리하면서 경량철골구조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인정할 수 없는 비내력 기둥으로 기둥 및 벽의 치수로 인정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신고)가 불가능 한데도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처리해 주었다.

그 결과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2]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미 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허가(신고)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층수	비고
					기존	신청		
허가	경주시 ◇◇읍 ◆◆리 ㄹ	2020. 11. 27.	BD	▲▲	168.15	53.51	3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 설치)
신고	경주시 ◎◎동 □	2019. 5. 17.	BC	△△	187	78.96	3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 설치)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1. 등록기준 미달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부담 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업체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되, 법령해석 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10호) 제6장 2.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³⁰⁾(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30)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단법인 건설산업

통보받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표 1]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1.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 만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 7. 절연저항측정기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2.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용접산업 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 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인 (주)●●●(대표자 BE,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 대해 국토교통부 ○○○○○과 -6304호(2018. 10. 1.), 7971호(2020. 10. 21.)호로 2회에 걸쳐 공문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업체로부터 실태조사 보고자료를 제출 받아 위의 [표 1]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 중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2018년 실태조사에는 전체 기간인 365일 동안, 2020년 실태조사에는

207일 동안 배치되지 않아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에 2019. 1. 24.과 2021. 1. 22.에 각각 “등록기준 충족 확인”으로 입력한 후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그 결과 기술인력 부족으로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건설업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건설업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2. 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종결하는 경우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45건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 받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청문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및 제100조 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적용)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 사유마다 4분의 1씩 감경하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마다 4분의 1씩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미부과 금액	비고 (합계)
		처분일자	금액			
(주)◇◇ (BF 외 1)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한내 신고 불이행	2017.06.28.	300	300	-	500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18.05.18.	750	1,250	500	

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미부과 금액	비고 (합계)
		처분일자	금액			
(주)◆◆ (BG)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한내 신고 불이행	2019.10.04.	150	150	-	5,750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20.01.02.	750	1,250	500	
	건설공사대장 미통보(3건)	2020.06.11.	2,250 (각 750)	7,500 (각 2,500)	5,250	
(주)□□ (BH)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17.04.04.	400	400	-	200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19.12.09.	400	400	-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한내 신고 불이행	2020.02.06.	300	375	75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한내 신고 불이행	2021.01.14.	375	500	125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위 [표 2]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1차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감경(부당 감경금액 6,450천 원)하여 부과하였다.

그 결과 위 “1”부터 “3”와 같이 실태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건설업 관리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주)●●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둔치조성사업 감독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 둔치조성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주) 대표자 BI와 2020. 4. 10. 공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둔치조성사업	둔치조성 L=1.9km	1,858	1,148	710	2020.4.20. ~ 2021.6.17.	◎◎(주) (BI)	

1.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 둔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시공자가 관련법령 및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험실 및 시험장비 미구비 등 품질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 미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³¹⁾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물가상승분 정산 현황

(단위 : 천 원)

물가상승분 반영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 반영액	미정산 금액	비고
8,503	7,758	745	

3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7개 항목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위 [표 2] 물가상승분 정산 현황과 같이 물가변동 조정 반영금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745천 원에 대한 정산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신고서를 접수하였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 둔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로 포장의 일부는 경계석 마감으로 거푸집이 불필요함에도 산출내역서에 거푸집을 반영하여 사업비 4,500천 원, 홍수방호벽 전단키의 거푸집 미시공 사업비 2,300천 원 및 연산홍 식재 후 관리부실로 연산홍 300주 정도가 고사 되었는데도 감액이나 재시공 등의 조치 없이 2021. 6. 17. 준공검사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물가상승분 미정산 및 미시공 공사비 7,545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검사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물가상승분에 대한 정산 보험료 및 미시공 사업비 7,545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주)●● 대표자 BJ과 2018. 5. 30. 계약하여 2021. 1. 13. 준공하였고, “○○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주) 대표이사 BK 외 1개사와 2020. 12. 31. 공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및 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하천재해예방 사업	하천 정비 L=8.09km	21,044	12,988	8,056	2021.01.05. ~ 2023.12.31.	◇◇(주) 외 1 (BK)	(주)●● (BJ)	3%
○○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90	890	-	2018.05.30. ~ 2021.01.13.	(주)●● (BJ)	-	준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합판거푸집과 유로폼의 경제성 비교·검토 없이 합판거푸집을 적용하여 사업비 62,208천 원, PP마대 쌓기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수량을 반영하여 사업비 62,037천 원(톤마대 규격 변경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리고 가설교량은 공사 추진 중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량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나 □□교 가설교량의 사각(skew)을 60°로 계획하여 하천 횡단방향에 최단거리로 설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설교량 L = 6m, 연결도로 L = 60m 길어지게 됨에 따라 사업비 39,48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또한 ○○○ ■■■교 가설교량은 당초 경주시 △△과에서 가설교량 설치 없이 ○○○ 상류측에 가도로만 계획하였으나, ○○○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시 가설교량으로 변경하면서 가설교량과 기존도로의 통행을 위한 연결도로에 대한 지장물 보상 및 철거, ▲▲을 횡단하는 추가적인 가교 설치 등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반영 없이 가설교량의 공사비만 설계서에 반영하여 연결도로에 대한 추가 공사비 투입과 설계변경 없이는 가교를 설치하여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재가설 계획인 ■■■교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상하행선을 각기 다른 교량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하행 교량의 시공시기 및 도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면 가설교량 설치 없이도 기존 ■■■교를 활용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 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가설교량 설치비 764,70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가설교량 설치계획 부적정 등으로 공사비 928,425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교 가설교량은 교통량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기준 및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경제적인 공법으로 변경하고, ■■교 가설교량은 기존 ■■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928,425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2020년 11월 24일 (주)●● BM(대표회사)과 계약하여 아래 [표 1]와 같이 “◇◇ 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1] 공 사 개 요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사 업 량	비 고
◇◇ 건설공사	(주)●● BM (주)◆◆ BN	9,666	2020.11.30. ~ 2023.11.14.	교량신설 L=371m(B=20m) 접속도로 1.8km	

※ 소재지 및 출자비율 : (주)●●(□□, 51%), (주)◆◆(■, 49%)

1. 교량 거더 등 분리발주 부적정

경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특허 등록된 교량 거더(■□거더)와 상부바닥판(◁▷콘크리트패널)을 관급(물품)구매로 분리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 분리발주 현황(특허)

(단위 : 천 원)

명 칭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특허번호	비 고
교량거더 제작 및 설치 (■□ 거더)	(주)△△	8,200,000	-	계약일 : 2021.03.12. (조달청)
교량상판 제작 및 설치 (▷◁콘크리트패널)	(주)▲▲	1,055,560 (추정금액)	-	미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특허공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은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³²⁾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은 교량 설계 시 거더 부분을 물품(관급자재) 제작·설치로 분할 설계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 사례를 시·군에 전파³³⁾하였다.

한편 교량공사는 기초, 교각, 거더,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공사로서 구조별·공정별로 분할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도 교량 거더 및 상부바닥판을 대체품이 없다는 사유로 관급(물품)구매로 분리 발주하였다.

2. 가설 교량 등 파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접합한 시설물

33) 경상북도 ☆☆☆-15882(2019.11.11.), “교량공사 분할 발주 관련 감사원 감사사례 알림”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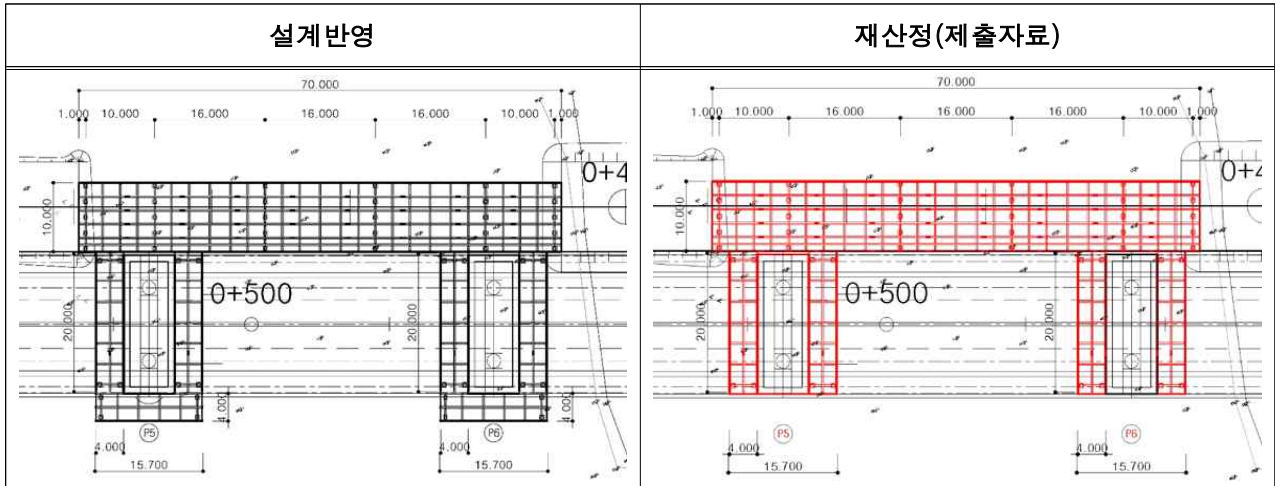
가. 가설교량(공사용) 과다 계상

경주시 ○○과에서는 “◇◇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가설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가설교량은 공사 수행 중 수로 구간에 공사차량의 운행 및 작업차량의 정차 (크레인 등)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정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한 후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주시 ○○과에서는 가축도 하류부까지 가설교량을 설계하여 총사업비 164,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3] 가설교량 설치 현황



※ L=15.7m(B=4) 2개소 설치 제외

나. 안전관리비 과다 계상

경주시 ○○과에서는 “◇◇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발파굴착은 공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파굴착 주변 구조물 피해방지대책비” 19,000천 원(제경비 포함)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가설교량 164,000천 원(제경비 포함) 및 안전관리비 (발파굴착 주변 구조물 피해방지대책비) 19,000천 원(제경비) 등 총사업비 183,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적정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현재 분할발주 하는 것으로 계획한 교량상판(◁◁콘크리트패널)을 본 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기 바라며,(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83,000천 원(제경비포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청구 등 정산 소홀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³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효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효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8%까지 적용함.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주시에서 추진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경주시 ◇◇◇◇◇과 및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안전띠, 위험 테이프, PE웬스, 안전웬스,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금액	목적 외 청구금액	비 고
계	3건			24,681	9,218	8건
◇◇◇◇◇과	□□공사	`18.07.30~ `19.08.25	(주)▽▽ BP	14,665	3,767	4건
	■ ■ 공사	`18.11.23~ `19.07.18	▼▼(주) BQ	7,410	3,450	2건
◆◆◆◆◆	△△공사	`18.11.20~ `19.04.25	☆☆(주) BR	2,606	2,001	2건

※ 경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그런데도 경주시 ◇◇◇◇◇과 및 ◆◆◆◆◆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총 8건의 9,218천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관련 안전관리비 지급 부적정

한편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³⁵⁾”의 경우에는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³⁶⁾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 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금번 감사기간 중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상기와 같이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 (주)★★(BS)은 “◁◁공사”의 안전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³⁷⁾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경주시 ○○○○과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총 4건의 9,249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36)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37) 계약상대자의 거래업체와 다른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자인서를 통해 인정함

[표 2] 산업안전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 제출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금액	허위부당 청구액	비 고
○○○○과	◁△공사	‘19.04.25.~ ‘20.04.17.	(주)★★ BS	39,999	9,249	4건

※ 경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나. 허위사진 제출관련 안전관리비 지급 부적정

그리고 “◀△공사” 등 3건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청구 시 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등 증빙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경주시 ○○○○과, ●●●●과, ◎◎◎◎과에서는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총 6건의 2,687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3] 사진 등 허위 자료제출 현황(사진재사용)

(단위 : 천 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금액	허위부당 청구액	비 고
계	3건			20,620	2,687	6건
○○○○과	◀△공사	‘20.03.03.~ ‘21.06.24.	(주)♠♠ BT	1,601	210	2건
●●●●과	▷△공사	‘17.11.17.~ ‘19.12.26.	(주)♠♠ BU	16,818	787	2건
◎◎◎◎과	▶△공사	‘19.11.14.~ ‘19.12.26.	♡♡(주) BV	2,201	1,690	2건

※ 경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다. 전자세금계산서 미 발행관련 안전관리비 지급 부적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따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계약상대자 (주)♥♥(BW)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안전관리비 증빙 자료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경주시 ○○○○과에서는 안전관리비 물품 등을 공급한 자(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적 발급 대상여부³⁸⁾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총 1건의 1,156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금액	허위부당 청구액	비 고
○○○○과	♀♀공사	‘18.06.19.~ ‘18.09.18.	(주)♥♥ BW	1,156	1,156	1건

※ 경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그 결과 경주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총 19건의 22,310천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8)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1년 4,800만원 미만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하나 적격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등) 확인 필요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위조 등) 및 수정 발급(취소)하여 증빙하여 안전관리비를 부당 청구·지급받은 (주)★★ BS, (주)♠♠ BT, (주)♠♠ BU, ♡♡(주) BV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47조(사기)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고,(시정)
- ③ 안전관리비 집행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한 (주)♥♥ BW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세무관련 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아울러 ②, ③ 사안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및 수정, 중복·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21,154천 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고,(시정)
-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1,156천 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세무관련 기관에 확인 후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료 등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면, ◎◎동
내 용

경주시에서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로점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표 1]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도로점용허가	5,789	1,439	1,369	1,396	1,585	-
도로점용료징수액	2,927,613	854,722	508,387	704,206	860,298	-

※ 2021년 정기분은 코로나 등으로 감면대상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에 부과·징수할 예정

1. 도로점용료 부과업무 부적정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인 경주시는 도로점용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착오 등으로 누락되어 아래 [표 2]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39건 도로점용료 225,297천 원을 미부과하는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도로점용료 미부과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39	-	9	20	10	-
미부과액	225,297	-	94,714	128,587	1,996	-

※ 경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2.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도로법」 제106조 제2항, 제117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에서는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토지·건물의 소유주 변경,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발생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2017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47건의 과태료 23,500천 원을 미부과하는 등 도로점용 권리·승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지연 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47	9	12	10	11	5
미부과액	23,500	4,500	6,000	5,000	5,500	2,500

※ 경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그 결과 경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료 및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지연에 따른 과태료 248,797천 원을(86건) 미부과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도로법」 제66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지 않은 도로점용자와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를 1개월 지나서 신고한 도로점용자에 대하여 각각 도로점용료 총계 225,297,080원과 과태료 총계 23,500,000원을 부과·징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